

서울특별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286
----------	------------

제안연월일 : 2026년 3월 10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안 정의 조항의 근거 법령이 명확하도록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규율된 용어를 조례와 일치하도록 그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내용

- 생성형인공지능의 용어를 상위법령에서 정의한 내용을 기준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3조제1호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이미지·텍스트·음성·영상 등의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변형·합성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인공지능으로서,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성형인공지능”이란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3조제1호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이미지·텍스트·음성·영상 등의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변형·합성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한다.</p> <p>2.·3.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인공지능으로서,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p> <p>2.·3.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생성형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올바른 가치판단과 윤리적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성형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인공지능으로서, 입력한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2. “윤리적활용”이란 생성형인공지능을 활용함에 있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허위 콘텐츠를 생성·유포·공유 등을 하지 않으며, 정보의 편향성과 허위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여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학생”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적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을 위한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
2. 학교급별 맞춤형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을 위한 교육 방안
3. 교직원의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대한 역량 강화 방안
4. 그 밖에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의 생성형인공지능 사용 실태 및 윤리의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학생의 생성형인공지능 사용 현황 및 목적
2. 딥페이크 등 합성 콘텐츠에 대한 인식 수준
3. 타인의 권리 침해 및 허위정보 생성에 대한 인식
4.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에 대한 이해도
5. 학교의 윤리교육 실시 현황 및 효과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① 학교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생성형인공지능 기술의 기본원리와 한계에 대한 이해
2. 생성형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성된 콘텐츠의 부적절성, 편견 등 문제 인식
3. 생성형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조작 콘텐츠(딥페이크 등) 제작·유포의 위험성 및 법적 책임
4.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과 방법에 관한 사항
5. 생성형인공지능 활용 시 출처 표기 등 학문적 정직성에 관한 사항

제8조(지침 보급) 교육감은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에 관한 지침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할 수 있다.

제9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교육감은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교직원, 공무원,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생성형인공지능의 윤리적활용과 관련된 교

육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대학·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